https://doi.org/10.36034/yncdoi.2023..85.285

「公文式」에서의 '國文使用' 企劃 主體

黃 渭 周*

Ⅰ. 머리말
Ⅱ. 정치적인 측면
Ⅲ. 외교적인 측면
Ⅳ. 학술적인 측면
Ⅴ.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公文式」에서의 '국문사용' 선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정치적, 외교적, 학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甲午更張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래서 갑오경장의 핵심적 추진 기관이었던 군국기무처와 그 구성원들을 점검해본 결과, 이 기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 약 10명, 그중에서도 유길준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문식」 또한 유길준이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일본 「공문식」을 변용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것은 「공문식」을 기획한 주체가 일본 사정에 정통하였음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 또한 유길준이었다. 그는 군국기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wzhwang@knu.ac.kr

무처 설립 이전부터 일본과의 외교문제 해결에 앞장섰고,「공문식」발표 직전까지 일본을 오가며 내정개혁 문제를 협의하였으며,「공문식」의 국문사용 선포를 연상시키는 글을 짓기도 하였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공문식」제14조가 일본「공문식」에 없는 것을 별도로 추가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렇듯 중요한 조항을 전격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國文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학문적 성찰이 필요했을 터인데,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이런 성찰이 있었던 인물은 유길준이 유일하였다. 유길준은 군국기무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國文觀을 정립하였고, 이런 생각을 각종 저서 논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공문식」에서의 '국문사용' 또한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한 것이었다. 따라서「공문식」에서의 '국문사용' 선포는 유길준의 기획이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유길준은 국·한문의 대전환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할 만하였다.

◈ 주제어
公文式, 俞吉濬, 國文, 漢文, 國·漢文交替, 甲午更張, 軍國機務處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BC300년경 한문을 처음 접촉하기 시작한 이래 국가의 모든 글쓰기를 한자와 한문으로 일관해왔다. 이와 같은 전통은 AD1443년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고 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일부 諺解와 詩歌의 기록에 한글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공교육에서 한글을 가르친 적이 없고, 인재 선발에도 한글 능력을 시험한 적이 없으며, 공적인 기록도 대부분 모두 한문으로 하였다. 2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와 한문이 國文의 자리를 완고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1)]

그러다가 1894년 11월 21일 국·한문의 大轉換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칙령 제1호로 「公文式」을 발표하면서 그 제14조에 "法律과 勅令은 모두 國文을 근본으로 삼고, 漢文 번역을 첨부하거나 혹 國漢文을 혼용한다."[2)]고 천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한 國文이란 그 뒤에 언급한 漢文이나 國漢文混用과 상대되는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國文의 자리를 차지한 漢文을 그 자리에서 퇴출시키고 마침내 한글을 國文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公文式」에서의 '국문사용' 선포가 가진 이런 획기적 의미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였다. 역사학계에서는 「공문식」의 내용과 그 정치사적 의미를 밝히는데 치중하였고, 서지학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야기된 문서 양식의 변화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며, 국어학계에서는 한글 사용을 주창한 개화기 자료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정도에 그쳤다.[3)]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선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

1) 漢文의 수용 시기와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黃渭周(1996·2004)에서 자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2) 『高宗實錄』 31년 11월 21일, 「公文式」,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이 문장의 의미는 尹在敏(2021)에서 자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尹在敏(2021)은 國文이 곧 國漢文混用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필자는 이것이 福澤諭吉의 '漢字節用論'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고 '우리글(한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3) 역사학계의 연구로는 柳永益(1990)·金雲泰(1993), 법제사 분야의 연구로는 鄭肯植(2

과 그 주도세력 및 이후의 진행 상황 등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연구 상황을 비판적으로 직시하면서 이 시기에 이런 선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검토한 바 있다.[4] 이 글은 이전의 배경 연구에 뒤이은 두 번째 작업으로, 「公文式」에서의 국문사용 선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치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정치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문식」은 우선 甲午更張의 일환으로 선포된 개혁정책의 하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오경장은 1894년 6월 25일 超政府的 會議體 형태로 軍國機務處를 설립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근대국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가리킨다. 「공문식」은 바로 이런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선포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공문식」을 기획한 주체 또한 갑오경장을 주도한 인물, 특히 군국기무처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6월 25일 總裁 1명과 議員 17명을 임명하고,[5] 다음날 郎廳 3인을 임명하며,[6] 그 다음날 다시 기존에 임명한 의원 17

002), 문서와 관련된 연구로는 권태억(1994)·이경용(2002)·김건우(2006)·이영학(2007), 국어학계의 연구로는 이응호(1994·허재영(2002)·김주필(2007), 한문학계의 연구로는 윤재민(2021)을 참고할 수 있었다.

4) 黃渭周, 「「公文式」에서의 '國文使用' 宣布 背景」, 『대동한문학』 68, 대동한문학회, 2021.

5) 『章程存案』(奎章閣所藏), "大朝鮮開國五百三年六月二十五日. 勅曰, 軍國機務處會議, 總裁領議政爲之, 內務督辦朴定陽, 協辦閔泳達, 江華留守金允植, 內務協辦金宗漢, 壯衛使趙羲淵, 大護軍李允用, 外務協辦金嘉鎭, 右捕將安駉壽, 內務參議鄭敬源, 朴準陽, 李源兢, 金鶴羽, 權瀅鎭, 外務參議俞吉濬, 金夏英, 工曹參議李應翼, 副護軍徐相集, 竝會議員差下, 使之課日來會, 妥商大小事務, 稟旨擧行." 『高宗實錄』 같은 날짜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

명 가운데 9명을 裁制委員으로 지명하면서[7]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7월 2일 魚允中 李泰容 權在衡 등 3인을 議員으로 추가 임명하고, 8월 22일 李泰容 李源兢 金夏英 등 3인을 면직시킴과 동시에 그 자리에 다시 李道宰 申箕善 禹範善 등 3인을 임명하였는데,[8] 이렇게 임명된 인물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官職	姓名	職責	任命日字	兼職
① 領議政	金弘集(1842~1896)	總裁	6월 25일	議長
② 內務督辦	朴定陽(1841~1905)	議員	6월 25일	副總裁
③ 內務協辦	閔泳達(1859~ ?)	議員	6월 25일	
④ 江華留守	金允植(1835~1922)	議員	6월 25일	
⑤ 內務協辦	金宗漢(1844~1932)	議員	6월 25일	
⑥ 壯衛使	趙羲淵(1856~1915)	議員	6월 25일	
⑦ 大護軍	李允用(1854~1939)	議員	6월 25일	
⑧ 外務協辦	金嘉鎭(1846~1922)	議員	6월 25일	
⑨ 右捕將	安駉壽(1853~1900)	議員	6월 25일	
⑩ 內務參議	鄭敬源(1851~1898)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⑪ 副護軍	徐相集(1865~1897)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⑫ 內務參議	朴準陽(1835~1895)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⑬ 內務參議	李源兢(1849~ ?)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⑭ 外務參議	俞吉濬(1856~1914)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⑮ 內務參議	金鶴羽(1862~1894)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⑯ 內務參議	權濚鎭(? ~ ?)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6) 『章程存案』, "同月二十六日. 內務府草記, 軍國機務急切浩繁, 文簿擧行, 澁滯萬萬可悶, 前司事柳正秀, 前主事吳世昌, 幼學金仁植, 幷內務主事加差下, 使之軍國機務處郎廳擧行事."

7) 『章程存案』, "同月二十七日. 議員中, 裁制委員, 鄭敬源, 徐相集, 朴準陽, 李源兢, 俞吉濬, 金鶴羽, 權濚鎭, 金夏英, 李應翼, 書記官, 吳世昌, 金仁植."

8) 추가 임명과 관련된 사항은 『議定存案』(奎章閣所藏)의 다음 몇 가지 기록을 참고하였다. "七月二日. 魚允中, 李泰容, 權在衡, 幷議員啓差事", "八月卄二日. 議員李泰容, 病未赴會, 李源兢金夏英, 現任外職, 幷減下事", "八月卄二日. 工務協辦李道宰, 同知中樞院事申箕善, 壯衛營正領官禹範善, 幷機務處議員差下, 李道宰申箕善, 由政府嚴飭, 使之不日赴會事."

⑰ 外務參議 金夏英(? ~ ?)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⑱ 工曹參議 李應翼(? ~ ?) 議員 6월 25일 裁制委員
⑲ 前司事 柳正秀(1857~1938) 郎廳 6월 26일
⑳ 前主事 吳世昌(1864~1953) 郎廳 6월 26일 書記官
㉑ 幼學 金仁植(? ~ ?) 郎廳 6월 26일 書記官
㉒ 宣惠堂上 魚允中(1848~1896) 議員 7월 2일(추가인물)
㉓ 吏曹參議 李泰容(? ~ ?) 議員 7월 2일(추가인물)
㉔ 內務參議 權在衡(1854~1934) 議員 7월 2일(추가인물)
㉕ 工務協辦 李道宰(1848~1909) 議員 8월 22일(교체인물)
㉖ 度支協辦 申箕善(1851~1909) 議員 8월 22일(교체인물)
㉗ 壯衛領官 禹範善(1857~1903) 議員 8월 22일(교체인물)

군국기무처에 참여한 인물은 위와 같이 대략 27명가량이었다. 이 중 총재 1인은 總理大臣이 겸하였고, 사무 전체를 총괄[總管]하였으며, 회의 때 議長을 맡고, 서기관 중 1인을 비서로 두었다.[9] 부총재 1인은 議員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겸하였고, 의장 有故 시 그 직을 대행하였다.[10] 의원 20인은 안건을 발의[發論]하여 토론하고, 가부 의결에 참여하였는데.[11] 가부는 종다수로 결정하였다.[12] 郎廳 3인은 방대하고 긴급한 문서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보조하기 위해 임명한 하급 관료였다.[13] 그래서 의안의 제안과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

9)『高宗實錄』31年 6月 28일 조항의 官制, “總裁一員, 總理大臣兼之.”
『章程存案』軍國機務處章程, “本處會議時, 總裁爲議長.” 같은 글, “議長擇書記官一人爲祕書官.”
10)『高宗實錄』31年 6月 28일 조항의 官制, “副總裁一員, 議員中秩高人兼之.”
『章程存案』軍國機務處章程, “議長有事故時, 副議長, 代執事務, 議長副議長具有事故, 則其次議員代辦.”
11)『章程存案』軍國機務處章程, “本處議事, 自議長副議長及議員所發論者, 係可議之事, 另有起草委員, 記其議案. … 議員中, 如另有己見願付會議者, 許其記錄呈請議長, 付會以定可否”, “議員所議事, 從其可否多少, 若可否相等, 則議長決之.”
12)『章程存案』軍國機務處章程, “議員所議事, 從其可否多少, 若可否相等, 則議長決之.”
13)『章程存案』軍國機務處章程, “同月二十六日, 內務府草記, 軍國機務, 急切浩繁, 文簿擧行澁滯, 萬萬可悶, 前司事柳正秀, 前主事吳世昌, 幼學金仁植, 幷內務主事加差下, 使之軍國機務處郎廳擧行事.”

였으며, 의장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는 書記官으로, 회의석 옆에서 議事 내용을 기록하고, 또 논의 대상으로 삼을 안건의 초안을 종합 정리하여 議員에게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14]

그러나 군국기무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해서 모두 개혁정책을 입안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 大院君 계파로 알려진 ⑫朴準陽 ⑬李源兢 ㉓李泰容 등은 처음부터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⑩鄭敬源 ⑬李源兢 ⑯權濼鎭 ⑰金夏英 ㉓李泰容 등은 議員으로 임명된 직후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사실상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⑬李源兢 ⑰金夏英 ㉓李泰容 등은 8월 22일자로 모두 면직되었다.[15]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여 ㉕李道宰 ㉖申箕善 ㉗禹範善 등을 임명하였는데, 이들 또한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었으니, ㉕李道宰의 사례에서 이런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李道宰는 康津縣 古今島에 유배되어 있다가 1894년 7월 6일 풀려났는데, 이후 예조참판(7월 19일), 공무협판(8월 7일) 등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부임하지 않았고, 거듭 부임 독촉을 받으면서도(8월 21일) 계속 사직소만 올렸다. 그러다가 군국기무처 의원으로 임명된(8월 22일) 뒤에는 그것마저 아예 면직시켜달라고 상소를 올렸던(9월 13일) 것이다. 군국기무처 의원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사실상 거의 활동하지 않았던 것이다.[16]

기타 회의에 참석은 하였지만 개혁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활동이 부진했던 인물도 적지 않았다. 閔妃의 종형제 ③閔泳達, 순종 비 純貞孝皇后의 숙부 ⑤金宗漢, 대원군의 서녀사위 ⑦李允用 등이

14) 『章程存案』 軍國機務處章程, "書記官, 一遵議長指委, 管理本處當務, 又在會議之席傍, 記其議事, 又合草記及可議之事, 交付議員."

15) ⑩鄭敬源은 7월 9일 湖西宣撫使로 나갔다가 8월 17일 다시 三南宣撫使로 파견되었다. ⑬李源兢은 8월 10일 北靑府使로 부임하였다가 8월 22일 면직되었다. ⑯權濼鎭은 8월 19일 關西宣諭使로 부임하였고, ⑰金夏英은 8월 7일 元山監理로 부임하였다가 8월 22일 면직되었다. ㉓李泰容은 6월 28일 경기도 南陽府按覈使로 나갔다가 8월 22일 면직되었다. 柳永益(1990) 141쪽 주석12번 참고.

16) 李道宰의 官職 任命과 군국기무처 議員 任命 및 辭職 上疏의 상황은 『高宗實錄』 해당 날짜에서 관련 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예인데, 이들은 대외관계 일을 맡은 적이 없었고, 외국을 시찰한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해외 사정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였으며, 이 때문에 개혁안의 입안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會議員 중에 革新의 眞意를 파악한 자가 극히 드물었다 … 會議員의 태반은 意義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日本國 公使館의 의견이 더해졌다고 추정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자가 없었다.”[17]는 등의 비판은 이런 인물이 의외로 많았음을 단적으로 지적한 예이다.

그렇다면 군국기무처 운영과 개혁안의 입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開港 이후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여 각종 조약의 체결과 해외시찰, 대외업무 등에 비교적 경험이 풍부하였던 ①金弘集 ②朴定陽 ④金允植 ㉒魚允中 등 중도적 입장의 온건 개화파,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한 이후 일본 公使館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군국기무처 설립 이전부터 이미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 ⑥趙羲淵 ⑧金嘉鎭 ⑨安駉壽 ⑭俞吉濬 ⑮金鶴羽 ㉔權在衡 등[18] 약 10여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9]

①金弘集은 문과에 급제한(1867) 이후 제2차 修信使(1880)로 일본을 시찰하였고, 이 때 黃遵憲의 『朝鮮策略』과 鄭觀應의 『易言』을 반입하여

17) 田保橋潔, 「近代朝鮮における政治的改革」, 『近代朝鮮史研究』, 朝鮮史編修會 研究彙報 第1輯, 昭和19년, 37쪽; 金雲泰(1993), 261쪽에서 재인용.

18) 1894년 5월 9일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직후 安駉壽가 日本公使 大鳥圭介에게 보낸 정보보고에 “今次 日本軍의 入韓으로 韓廷이 크게 驚動 중임을 기회삼아 평소 改革을 희망하던 人士들이 활발히 운동을 개시했다고 傳聞된다. 주로 金嘉鎭 趙羲淵 權瀅鎭 俞吉濬 金鶴羽 安駉壽 洪鍾宇 등으로, 우선 閔氏를 後退시키고 대원군을 總理로 推戴하여 政事의 근본부터 개혁하자는 계획이라고 전한다.”라고 기록, 일본 공사관 서기관 杉村濬이 『在韓苦心錄』에서 趙羲淵 安駉壽 金嘉鎭 金鶴羽 俞吉濬 權瀁鎭 權在衡 등을 조선의 개혁파로 지목한 것 등을 참고하였다. 전자는 김운태(1993) 248쪽, 후자는 같은 책 255쪽을 참고하였다.

19) 柳永益(1990)은 군국기무처를 주도한 핵심멤버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 10명 외에 李允用을 포함시켰고(257쪽), 金雲泰(1993)는 權瀁鎭을 포함시켰다(260쪽). 그러나 李允用은 개화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해외 시찰을 한 경험이 없고, 權瀁鎭은 1894년 8월 19일 關西宣諭使로 부임하여 군국기무처에서 끝까지 활동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조정에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인천항 개항 문제를 협상하고(1880), 미국(1882) 영국·독일(1883) 등과의 통상조약, 濟物浦條約과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 漢城條約(1885) 등 여러 조약의 체결 실무를 맡았으며, 督辦交涉通商事務(1884) 外務督辦(1884) 등으로 대외교섭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甲申政變(1884)에는 참여하지 않은 온건개화파였는데, 일본이 군대까지 동원하여 내정개혁을 강요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군국기무처 설립에 찬동하고 總裁를 맡기에 이르렀다.

②朴定陽은 문과에 급제한(1866) 이후 朝士視察團(1881)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한 바 있고, 이후 統理機務衙門 소속 理用司의 堂上經理事, 協辦交涉通商事務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초대 駐美全權公使(1887)로 부임하여 미국 사정에 밝았다. ㉒魚允中 또한 문과에 급제한(1869) 이후 조사시찰단(1881)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한 바 있고, 問議官(1882)으로 청나라에 가서 李鴻章과 서양 제국과의 조약 체결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1883) 中江貿易章程(1883) 등의 체결을 주도하는 등 일본 중국 사정에 두루 통하였다. ④金允植은 문과에 급제한(1874) 이후 청나라 領選使로 나가 李鴻章과 7차례 회담한 바 있고, 袁世凱의 도움으로 鎭撫營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갑신정변 때 중국의 원조를 이끌어내는 등 중국 사정에 밝았다.

김홍집 이하 4인은 모두 문과에 급제한 양반 관료 출신으로, 군국기무처 의원 가운데 나이가 비교적 많고, 관직 또한 參判(協辦) 이상의 원로들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王黨派 大院君派 甲申政變派 등 그 어떤 정파에도 일방적으로 경도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⑥趙羲淵은 무과에 급제한(1874) 이후 주로 무기를 제조하는 機器局에 근무하였고, 軍器 시찰과 수입을 위해 상하이 홍콩 도쿄 오사카 등지를 둘러본 바 있으며(1887), 淸나라의 군대 파병은 반대하면서도 일본의 군대 파병은 환영하는 친일적 입장을 보였다.[20] ⑧金嘉鎭은 당초 通

商事務衙門 主事로 대외관계 일을 담당하였고, 駐箚日本公使館 參贊官으로 일본에 체류한 적이 있으며, 1887년부터 4년간 辦事大臣駐日公使로 도쿄에 주재하기도 하였다. ⑨安駉壽는 일찍 개화에 눈을 떠서 일본을 왕래하다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로 발탁되었고(1887), 최초의 주일공사 閔泳駿의 통역관으로 일본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민영준이 사임한 뒤에는 귀국하여 別軍職 典圜局幇辦 등에서 주로 화약을 생산하는 製藥所의 설립과 신식 화폐의 발행 사무 등에 참여하였다.

⑮金鶴羽는 어린 시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장하였고, 일본 도쿄로 건너가(1876) 약 1년 반 동안 語學敎師로 체류한 적이 있다. 그리고 張博의 주선으로 관직에 진출한(1884) 뒤에는 機器局 典圜局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일본 중국 등지에서 선박 무기 석탄 전선 등을 수입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㉔權在衡은 東萊監理署 書記官으로 관직을 시작하여(1883)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1885)와 같은 대외 관련 부서에서 주로 일을 하였으며, 정부의 명으로 일본을 시찰하기도 하였다(1888), 그리고 이후 駐箚日本書記官(1891) 駐箚日本辦事大臣(1891) 등으로 일본에 체류하였고, 도쿄에서 오스트리아와의 朝·奧修好通商條約 체결(1892)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⑥趙羲淵 이하 5인은 모두 서얼 출신으로[21] 문과 급제자가 아니고[22],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며, 機器局 通商事務衙門 등 신식 관청의 하급직에서 벼슬을 시작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駐日公使館의 公使(김가진) 書記官(권재형) 通譯官(안경수), 기타 語學敎師(김학우) 視察(조희연) 등으로 일본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으며, 정파적으로 친일적 경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과 때를 같이 하여 고종을 물러 앉히고 대원군을 攝政으로 옹립하여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군국기무처 설립을 주도하였으니,[23] 사실상 군국기무처의 핵심 실세

20) 柳永益(1990), 111~112쪽. 大村의『朝鮮貴族列傳』156~158쪽에서 인용한 부분.
21) 柳永益(1990), 141쪽, '軍國機務處 核心멤버의 背景' 참고.
22) 金嘉鎭은 예외로, 1886년 뒤늦게 庭試文科에 급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3)『俞吉濬全集』5책,「'民衆의 親友-俞吉濬先生」, 375쪽, "歲甲午에 入하여 日 淸이

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⑭俞吉濬이다. 유길준은 朝士視察團의 일원이었던 魚允中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서(1881)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慶應義塾에서 수학하였고, 다시 報聘使 閔泳翊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1883) 더머 학원(Dummer Academy)에서 수학하였으며, 갑신정변 직후 귀국 조치를 당하면서도(1885) 기어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을 두루 돌아보고 올 정도로 서구적 근대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듣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西遊見聞』을 저술함으로써 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길준은 군국기무처 모든 구성원의 구심점이기도 하였다. 온건개화파 원로 ④金允植 ㉒魚允中 등과는 朴珪壽와 姜瑋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선후배 사이였고, 친일 개화파 젊은이 ⑥趙羲淵 ⑮金鶴羽 ⑯權濼鎭 등과는 軟禁에서 풀려난(1892) 직후 막역하게 지내온 터였으며,[24] 또 다른 한 축이었던 대원군과의 관계도 원만하였다.[25]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였는지라 일본 공사관의 신임이 높았으며, 총재요 의장인 김홍집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26] 그래서 군국기무처

相衝하야 朝鮮의 政界는 그 局面을 一轉할 運에 至한지라, 선생은 이에 翻然히 起하야 全心力으로써 新局面의 開拓에 當할새 金(鶴羽) 權(濼鎭) 兩人을 始하야 在朝의 趙羲淵 安驅壽 金嘉鎭 等의 諸有志와 其謀를 共定하고 六月二十一日 拂曉를 期하야 日兵의 出動과 共히 雲峴宮의 大院君을 擁하고 景福宮에 入하야 破竹의 勢로써 內政의 改革을 斷行하니 是가 卽 甲午의 改革이다." 참고.

24) 『俞吉濬全集』 5책, 「'民衆의 親友-俞吉濬先生」, "一自赦免以後의 先生은 當時政界의 正面에 立 하지 아니하고 當時의 志士이며 또 外國通인 金鶴羽 權濼鎭 兩人과 朝暮相善하는 以外에 別로 當時政局의 有力者 趙羲淵과 氣脈을 相通하야 … ". 이 글은 본래 1922년 3월 『開闢』지에 발표된 것이었다.

25) 俞吉濬이 大院君을 高宗을 대신할 攝政으로 추대하는 데 앞장서고 또 軍國機務處의 한 축으로 참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民衆의 親友-俞吉濬先生」 참고.

26) 田保橋潔, 「近代 朝鮮에 있어서의 政治的 改革」, 『近代朝鮮史硏究』, 朝鮮史編修會, 1944, "會議員中 趙羲淵 金嘉鎭 安驅壽 俞吉濬은 親日分子의 代表的이었으나 그 중에도 俞吉濬은 總裁 金弘集으로부터 깊이 信賴를 얻고 있었고 日本國 公使館과

를 사실상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아래 그림에서 이런 정황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軍國機務處 會議圖>[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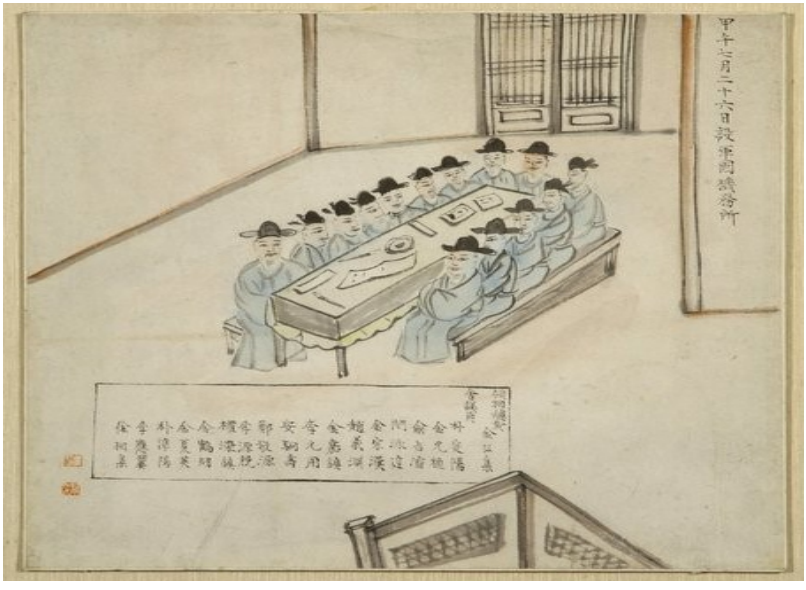

위는 군국기무처 설립 직후인 1894년 7월 26일 회의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 座目은 중간 네모 칸에 제시하였는데, 오른쪽부터 ①領相 議長 金弘集, 會議員 ②朴定陽 ③金允植 ④俞吉濬 ⑤閔泳達 ⑥金宗漢 ⑦趙羲淵 ⑧金嘉鎭 ⑨李允用 ⑩安駉壽 ⑪鄭敬源 ⑫李源兢 ⑬權濚鎭 ⑭金鶴羽 ⑮金夏英 ⑯朴準陽 ⑰李應翼 ⑱徐相集 등의 순

大院君과의 連絡을 맡아 事實上 軍國機務處 會議의 推進勢力인 느낌을 주었다"; 李光麟, 『俞吉濬』, 동아일보사, 1992, 98쪽 재인용.

27) 趙錫晉, 軍國機務所圖.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국기무처 조항 재인용.

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길준을 ①총재 김홍집, ②부총재 박정양, 그리고 여타 의원 중 나이가 가장 많고 관직이 제일 높은 원로 ③김윤식 바로 다음 자리에 배정한 점이다. 유길준은 당시 39세로 나이가 많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벼슬이 높지도 않았다. 그리고 임명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뒤인 ⑭번째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위의 그림에서는 동급의 다른 인물은 모두 이전과 마찬가지로 ⑪鄭敬源 이하에 등재하면서 유길준만 특별히 의전상 예우해야 할 총재 부총재와 최고 원로 바로 다음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가 군국기무처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듯 군국기무처의 운영과 개혁안의 입안에서 유길준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한 예는 대단히 많다. "선생(유길준)이 거의 萬事를 主張하였다 … 이는 모두 주로 先生이 考案해 낸 것이다 … 김홍집을 우두머리로 받들고 선생이 政務의 대부분을 主張하였다."[28] "유길준이 사실상 군국기무처 회의의 추진 세력인 느낌을 주었다"[29] "누가 중심이 되어 개혁을 추진하였을까 … 유길준이 아니었나 생각된다."[30] "俞吉濬은 총재 金弘集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 日公館 및 대원군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사실상 군국기무처의 추진자가 되었다."[31]는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문식」은, 그것이 군국기무처를 통해 추진된 갑오개혁의 일환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군국기무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인사 약 10명, 그 중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의 구심체 역할을 한 유길준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28) 『俞吉濬全集』 5책, 「民衆의 親友-俞吉濬 先生」, 『開闢』 21호, 1922년 수록. 위의 인용문은 原文의 舊套를 알아보기 쉽도록 일부 현대식으로 다듬은 것이다.
29) 田保橋潔, 「近代 朝鮮에 있어서의 政治的 改革」, 『近代朝鮮史硏究』, 조선사편수회, 1944; 李光麟(1992), 98쪽 재인용.
30) 李光麟, 『유길준』, 근대인물한국사206, 동아일보사, 1992, 100쪽.
31)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 一潮閣, 1993, 260쪽

Ⅲ. 외교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공문식」은 먼저 주요 내용 대부분이 일본 「공문식」을 변용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공문식」은 조선보다 약 8년 앞선 明治19년(1886) 2월 26일 선포되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일본 「공문식」을 표본으로 삼아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은 삭제하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조항은 일부 추가하며, 기능은 유사하지만 명칭이 서로 다른 제도나 관직 등을 우리식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명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문식」을 입안하였던 것이다. 일본 「공문식」은 아직 한문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내용 소개를 겸하여 일본 「공문식」 조항을 먼저 앞에 제시하고, 그 아랫부분에 상응하는 조선 「공문식」 조항을 배치하여, 양자의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 대비해본다.

第 一條 法律과 勅令은 上諭로써 공포한다.
法律이 元老院의 協議를 거쳐야 하는 것은 舊例에 의한다.

제 1조 法律과 勅令은 上諭로써 공포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줄친 부분 생략.

第 二條 法律 勅令은 內閣이 起草하거나 또는 各省大臣이 案을 갖추어 內閣에 提出하며 모두 內閣 總理大臣이 上奏하여 裁可를 請한다

제 2조 法律과 勅令은 議政府가 起草거나 또는 各衙門大臣이 案을 갖추어 의정부에 제출하면 의정부회의를 거쳐 擬定한 후 총리대신이 上奏하여 裁可를 청한다. 단 긴급하지 않은 법률 칙령은 총리대신이 中樞院에 諮詢할 수 있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줄친 부분 추가. 內閣을 議政府로, 省을 衙門으로 수정

第 三條 法律 및 一般行政에 관한 勅令은 親署한 후에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은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임대신과 함께 副署한다. 各省의 專任事務에 속하는 것은 主任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이에 副署한다.

제 3조 法律 및 一般行政에 관한 모든 勅令은 親署한 후에 御璽를 찍고 總理大臣이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임대신과 함께 副署한다. 各衙門 專任事務에 속하는 것은 主任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이에 副署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省을 衙門으로 수정

第 四條 內閣總理大臣 및 各省大臣은 法律 勅令의 範圍內에서 그 職權 또한 特別委任에 의하여 法 律 勅令을 施行하거나 또는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위하여 閣令 또는 省令을 發할 수 있다.

제 4조 總理大臣 및 各衙門大臣은 法律 勅令의 範圍內에서 그 職權 또한 特別委任에 의하여 法律 勅令을 施行하거나 또는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위하여 議政府令 또는 各衙門令을 發할 수 있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閣을 議政府로, 省을 衙門으로 수정.

제 5조 警務使와 地方官은 관내 행정 사무와 관계하여, 직권이나 특별위임에 따라,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警務令 및 地方官令을 관내 전체 혹은 일부에 내릴 수 있다.

○대비결과 : 警務令 地方官令 관련 조항 추가.

제 6조 警務令과 地方令이 內務大臣이나 기타 主任大臣에게 공익을 해치고 규정에 위반되며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인식될 때는 응당 취소 혹은 중지시켜야 한다.

○대비결과 : 警務令 地方令 관련 조항 추가.

第 五條 閣令은 內閣總理大臣이 이를 발하고 省令은 各省大臣이 이를 발한다.

제 7조 議政府令은 總理大臣이 이를 발하고 衙門令은 各衙門大臣이 이를 발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閣을 議政府, 省을 衙門으로 수정

第 六條 閣令은 年月日을 記入하여 內閣總理大臣이 이에 署名한다.

제 8조 議政府令은 年月日을 記入하여 總理大臣이 署名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內)閣을 議政府로 수정.

第 七條 省令은 年月日을 記入하여 主任大臣이 이에 署名한다.

제 9조 衙門令은 年月日을 記入하여 主任大臣이 이에 署名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省을 衙門으로 수정.

제10조 警務令은 연월일을 기입하고 警務使가 서명한다.

○대비결과 : 警務令 관련 조항 전체 추가

젠11조 地方令은 연월일을 기입하고 地方官이 서명한다.

○대비결과 : 地方令 관련 조항 전체 추가

第 八條 각 官廳 一般에 관한 規則은 內閣總理大臣이 이를 정하고 各廳處務細則은 主任大臣이 이를 정한다.

제12조 각 官廳 一般에 관한 規則은 議政府會議를 거쳐 시행하고, 各廳庶務細則은 主任大臣이 정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줄친 부분 수정. 內閣을 議政府로 수정.

第 九條 內閣總理大臣 및 各省大臣의 所屬官吏 및 그 監督에 속하는 관리들에게 達하는 訓令도 역시 제6조 제7조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總理大臣과 各衙門大臣의 所管官吏 및 그 監督에 속하는 관리들에게 達하는 訓令도 역시 제 8조 제9조 제12조의 예에 의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제14조 法律과 勅令은 모두 國文을 근본으로 삼고, 漢文 번역을 첨부하거나 혹 國漢文을 혼용한다.

○대비결과 : 일본 공문식에 없는 내용 추가.

第 十條 무릇 法律 命令은 官報로 公布하며, 官報의 各府縣廳 到達日數에 7일을 더하여 施行期限으로 한다. 단 官報到達日數는 明治16年5月26日 第14號 布達에 의한다.

제15조 무릇 法律 勅令 관계는 官報로 布告한다. 그 施行期限은 法律 命令이 정한 바에 의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줄친 부분 수정.

第十一條 天災時變에 의해 官報到達日數內에 到達하지 않으면 그 到達日의 翌日부터 起算한다

○대비결과 : 시행 기한 관련 11조 전체 삭제

第十二條 홋카이도 및 오키나와 縣 은 官報到達日數를 정하지 않고 실제로 道廳 또흔 縣廳에 到達한 翌日부터 起算한다

○대비결과 : 시행 기한 관련 12조 전체 삭제

第十三條 法律 命令의 發布當日부터 施行하여야 하거나 또는 특히 施行日을 揭載한 것은 第10條, 第11條, 第12條의 예에 의하지 않는다.

○대비결과 : 시행 기한 관련 13조 전체 삭제

第十四條 國璽 御璽는 內大臣이 이를 항상 保管한다. 國璽 御璽는 親署한 후에 內大臣이 이를 찍는다.

제16조 國璽는 宮內大臣이 이를 管藏한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줄친 부분 생략

第十五條 法律 勅令은 親署한 후에 御璽를 찍는다.

제17조 法律 勅令은 親署한 후에 御璽를 찍는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第十六條 國書, 條約批準, 外國派遣官吏委任狀, 在留各國領事証認狀 및 三等 이상 勳章의 勳記는 親署 후에 國璽를 찍는다. 四等 이하 勳章의 勳記는 國璽를 찍는다.

제18조 國書, 條約批準, 外國派遣官吏委任狀, 在留各國領事証認狀은 親署 후 國璽를 찍는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줄친 부분 생략.

第十七條 勅任官의 任命은 그 辭令書에 御璽를 찍고 奏任官의 任命은 그 奏薦書에 御璽를 찍는다.

제19조 勅任官의 任命은 그 辭令書에 御璽를 찍고 奏任官의 임명은 그 奏薦書에 御새를 찍는다.

○대비결과 : 주요 내용 동일

위에서 □ 안은 일본「공문식」조항이고, □ 밖은 그에 상응하는 조선「공문식」조항이다.[32] 일본「공문식」은 전체가 17개 조항, 조선「공문식」은 전체가 19개 조항인데, 이는 일본의 17개 조항 가운데 제11·제12·제13 등 3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선「공문식」제5·제6·제10·제11·제14 등 5개 조항을 추가한 결과이다. 삭제한 것은 법률과 명령의

32) 일본「공문식」은 鄭肯植의『統監府法令體系分析』(韓國法制硏究院硏究, 1995) 247~248쪽에 번역 소개한 것을 참고하였다. 조선「공문식」은 1894년 11월 21일 발표된 漢文本과 1895년 5월 8일 발표된 國漢文混用體 수정본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漢文本을 국역하여 제시하였다.

시행 기한에 관한 것인데, 조선의 지리적 환경이 섬나라 일본과 달라서 오키나와 등 특수 지역 사정을 따로 규정한 조항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다. 추가한 것은 警務令과 地方令을 발령하는 주체(5조) 방법(10·11조) 취소(6조) 기타(14조) 등에 대한 것인데, 이 또한 일본과 다른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일본의 「공문식」 17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조항은 조선의 「공문식」에서 모두 다 수용하였다. 어떤 조항은 문구 전체를 수정 없이 그대로 옮겨놓았고(9, 15, 17조), (內)閣을 議政府로 省을 衙門으로 변경하는 등 상응하는 관청의 명칭만 일부 수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도 있으며(3·4·5·6·7조), 내용 가운데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생략하거나(1·14·16조) 꼭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추가하고(2조) 변용한(8, 10조) 것도 있었다. 그리고 전체를 제1장 頒布式, 제2장 布告, 제3장 印璽 등 3장으로 구성한 것도 같았으며, 핵심적 개념어 또한 모두 동일하였다. 일본 「공문식」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조선의 현실에 알맞게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공문식」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나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1894년 11월 21일 「공문식」을 정식으로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 「공문식」의 내용을 알고 그 가운데 일부 조항을 활용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다. 군국기무처 설립 직후인 1894년 7월 12일 선포한 「命令頒布式」이 바로 그것인데, 「命令頒布式」의 내용 또한 모두 일본 「공문식」에 근거하였다. 「명령반포식」을 앞에 제시한 일본 「공문식」과 다시 대비해본다.

제1조 命令紙 양식
　　○대비결과 : 일본과 조선의 「공문식」에 모두 없는 조항
제2조 국내 모든 법률과 칙령은 다 上諭로 반포한다.
　　○대비결과 : 일본 1조와 주요 내용 동일. 줄친 부분 생략
제3조 법률과 칙령은 總理大臣이 起草하거나 또는 衙門 대신이 案을 갖추어 의정부에 제출하면 총리대신의 奏請을 통해 主上이 재가한다.

○대비결과 : 일본 2조와 주요 내용 동일. 內閣을 總理大臣, 省을 衙門으로 수정

제4조 법률과 정치에 관한 勅令은 御押을 한 후 御璽를 찍고,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입하고 主務大臣과 함께 그 밑에 聯書한다. 만약 한 아문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무대신이 그 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아래 서명한다.

○대비결과 : 일본 3조와 주요 내용 동일. 省을 衙門으로 수정. 표현 일부 수정.

제5조 총리대신과 각 아문 대신들은 법률과 칙령의 범위 내에서 직권과 특별 위임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府令이나 衙令을 내릴 수 있다.

○대비결과 : 일본 4조와 주요 내용 동일. 省을 아문으로 수정. 표현 일부 수정.

제6조 법률과 명령은 모두 官報로 반포하며, 각 州縣은 그 명령이 도착한 후 7일까지를 시행 기한으로 삼는다.

○대비결과 : 일본 10조와 주요 내용 동일. 府縣廳을 州縣으로 수정. 줄친 부분 수정

제7조 각 州縣은 거리의 원근에 따라 모두 官報의 명령이 도착하는 기한이 있다. 만약 천재지변 때문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명령이 도착한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대비결과 : 일본 11조와 12조 내용 종합 수정.

제8조 國書 條約批准 外國派遣官吏委任狀 在留各國領事認可狀은 모두 마땅히 御押을 하고 御璽를 찍어야 한다.

○대비결과 : 일본 16조와 주요내용 동일. 줄친 부분 생략

제9조 칙임관을 임명할 경우 그 관직의 敎旨에 御押을 하여 御璽를 찍고, 奏任官이라면 다만 御璽만 찍는다. 判任官인 경우 추천하는 대신이 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啓下 후 추천한 대신이 奉敎職牒을 작성해주되 직접 署押하고 蓋印을 찍는다.

○대비결과 : 일본 17조와 주요 내용 동일. 判任官 관련 추가.

「명령반포식」[33]은 위와 같이 전체가 9개 조항이었다. 이 가운데 제1

33) 「命令頒布式」은 漢文으로 작성한 原文이 『章程存案』에 수록되어 있는데, 위에 제시

조는 종이 양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듯한데,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나머지 8개 조항은 대개 법률과 칙령 및 각급 관청의 명령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주체, 방법, 시행 기한, 문서 요건, 기타 官吏의 임명 서류와 외교문서 등을 규정한 것들인데, 이들과 상응하는 조항을 일본 「공문식」에서 찾아 대비해본 결과, 그것이 예외 없이 모두 일본 「공문식」에 근거한 것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內閣을 總理大臣, 省을 衙門으로 변경하고(3, 4, 5조),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 일부를 생략하거나(1조) 추가하기도(9조) 하였는데,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이후 새롭게 선포한 「公文式」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선의 「공문식」을 기획한 주체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일본의 「공문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명령반포식」을 제정할 때부터 이미 일본 「公文式」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며, 이후 조선 「공문식」을 별도로 제정하여 선포할 때까지 일본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였을까.

군국기무처 구성원, 특히 전체 활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 약 10여명은 대부분 일본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곳에 장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총재 金弘集은 제2차수신사(1880)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변화상을 직접 관찰한 바 있고, 이후에도 外務督辦으로 외교관계 일을 총괄하기도 하였다. 朴定陽과 魚允中도 모두 朝士視察團(1881)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한 적이 있고, 趙羲淵도 오사카 도쿄 등지를 방문하여 砲兵工廠을 견학한 바 있다. 기타 金嘉鎭은 駐箚日本公使館의 參贊官과 辦事大臣으로, 權在衡은 주차일본공사관의 書記官과 辦事大臣으로, 안경수는 초대 駐日公使였던 閔泳駿의 통역관으로, 金鶴羽는 도쿄에서 활동한 語學敎師 등으로 일

한 것은 바로 『章程存案』 漢文本을 번역한 것이다. 「命令頒布式」의 대비 대상으로 삼은 일본 「공문식」은 앞에 이미 제시한 바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정 기간 이상 일본에 체류하였다. 그러니까 金允植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두 일본을 방문하여 근대적 변화의 실상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다 일본 「공문식」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김홍집이 수신사로(1880), 박정양과 어윤중이 조사시찰단으로(1881)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 아직 「공문식」을 발표하기(1886) 이전이었다. 그리고 박정양은 이후 주미공사(1887)로 파견된 것을 계기로 미국 관련 일에 관심이 더 많았고, 어윤중은 問議官(1882)으로 청나라에 파견된 것을 계기로 청나라 관련 일 처리에 더 관심을 보였다. 조희연과 안경수는 일본을 자주 왕래하였지만 문서행정보다 총포와 화약의 생산과 수입, 신식화폐의 발행 등에 주로 관심을 보였고, 김학우는 선박 석탄 등을 거래하기 위해 일본을 왕래하다가 대원군 일파의 미움을 받아 공문식 발표 이전에(1894.10.31.) 피살되었다. 김가진과 권재형은 公使館의 일상적 업무 이외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며, 귀국 후에는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일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

그런데 유길준은 이들과 크게 다른 바가 있었다. 그는 최초의 일본 유학생으로(1881.5.)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로부터 일본과 서양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기회가 있었고, 연이은 미국 유학(1883.7.)과 유럽 여행(1885.6.)으로 서구적 근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지식정보를 학문적으로 종합하여 『西遊見聞』 20編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세계의 지리 인종 물산은 물론, 정치 경제 법률 행정 학문 종교 교육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조정 고관들이 모두 그를 해외 사정에 가장 정통한 인물로 인정하였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할 때는 그를 通商事務衙門 主事로 발탁하여(1894.05.20.)[34] 외교 교섭의 실무를 맡게 하였으며, 이 때 일본의 요구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

34) 李光麟(1992) 95쪽, "6월 23일(음력5월 20일) 유길준을 외아문, 즉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접촉케 하였다. 유길준이 일본의 실정도 알고 국제법에 밝다는 것을 고관들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35] 그리고 교섭 결과로 탄생한 군국기무처에 외교 실무를 전담하는 외무참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일본 「공문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가 「공문식」 발표 직전(1894. 09.11.)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일본을 시찰하였다는 점이다. 이때의 일본 시찰은 추밀원 고문관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의 조선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正使는 義和君이었고, 수행원이 6명, 시찰원이 9명이었는데, 그는 시찰원 9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36] 그러나 그는 단순 시찰원이 아니었다. 조선의 내정개혁 문제를 두고 일본 정계 지도자들과 폭넓게 협의하라는 총리대신 김홍집의 특명을 받았기 때문이다.[37] 그래서 그는 의화군과 별개로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육군대신 에노모투 다케아키[榎本武揚], 강화도 조약 일본 측 대표였던 구로다 키요타키[黑田淸隆], 내무차관 하야시 다다스[林董], 자신의 스승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이렇게 함으로 조선의 내정개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자문을 구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된 일본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진력하였던 것이다.[38]

---

35) 李光麟(1992), 95쪽, “일본은 조선 정부에 대해 내정개혁 단행의 여부에 대한 태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유길준은 조선정부의 법률고문이었던 그레이트하우스와 상의한 뒤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에게 회답을 보냈다. 그것은 외아문 독판 조병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유길준이 쓴 것이었다.”

36) 수행원 6명은 學務衙門參議 高永喜·機器局委員 李準榮·宮內府主事 田畯基·前訓練僉正 張淳奎·前主事 金洛駿·司勇 金演泰 등, 시찰원 9명은 議政府都憲 俞吉濬·壯衛營領官 李秉武·前縣監 金思濬·外務衙門主事 金觀濟·議政府主事 趙重應·議政府主事 尹致昊·前主事 韓善會·度支衙門主事 魚允迪·金昌浩 등이었고, 하인 李熙容·申聲求·韓景履·李浩奭 등 4명이 동행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군국기무처 구성원은 俞吉濬이 유일하였다.

37) 특명의 내용은 크게 ①내정개혁 상황 설명과 향후 문제점 ②國債 발행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의견 조회 ③政事에 대한 일본인 顧問官 초빙 등에 대한 것이었다. 李光麟(1992) 107쪽, 朴漢民(2017) 63~64쪽 참고.

38) 俞吉濬이 일본 報聘使의 視察員으로 渡日하여 일본 내에서 활동한 상황에 대해서는 朴漢民(2017)에 자세하다. 그리고 이때 일본 정계 지도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問答」

유길준은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귀국한(1894.11.16.) 이후 개혁의 추진 주체를 교체하고 속도와 방향을 재조정하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내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그래서 일본 측에서 핵심적 제거 대상으로 지목한 대원군을 찾아가 개혁의 불가피성을 눈물로 호소하였고, 결국 攝政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39]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해산하고 그 권한을 내각으로 다시 되돌리며,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여 박영효를 내무대신 서광범을 법무대신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새 내각을 중심으로 다시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문식」은 이렇게 제2차 갑오개혁에 착수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칙령 제1호였으며, 이때 외교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인물이 바로 유길준이었다.

하나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즈음 유길준이 「공문식」의 국문 사용 원칙 선포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언급을 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 사람은 한문 서적을 읽은 이래로 頑固함에 익숙하여 애국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각자 마음먹고 자잘한 이익이나 꾀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할 방법을 힘쓰되, 조선의 국문을 사용해서 훈도하거나 익힘이 편하도록 해서 愛國을 가르쳐야 합니다."[40]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날 한문 학습의 폐단과 부작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나

(俞吉濬全書 5책 수록)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39) 일본 지지신보[時事新報] 12월 6일 기사, "俞吉濬이 울면서 大院君에게 忠告함. 議政府 都憲 俞吉濬 日本에서 歸國하자마자 곧 大院君邸를 訪問하여 朝鮮이 改革하지 않을 수 없음을 說明하고 萬若 이런 狀態로 經過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좋지 못한 將來를 볼 것이라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大院君에게 忠告하였다. 또 井上公使의 勸告를 따라야 될 것도 이야기하였다 한다. 大院君도 俞吉濬의 切諫에 따라 크게 決心을 빨리 했던 모양"; 李光麟(1992) 111쪽 재인용.

40) 俞吉濬, 「與福澤諭吉書」, 『俞吉濬全集』 5책, 278쪽, "朝鮮人, 自讀漢書以來, 頑固成習, 不知愛國心爲何等事, 各自爲心, 只謀小利者久矣, 故務先行敎育法, 而用朝鮮國文, 以便訓習, 使敎以愛國." 『俞吉濬全集』에는 이 서간을 1895년 12월 28일 작성한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1894년 12월 28일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朴漢民(2017) 69쪽 주석 115번 참고.

라의 미래를 위해 國文敎育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인데, 이렇듯 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바로 「공문식」에서 국문사용 원칙을 선포한 논리와 동일한 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길준은 일본 사정에 가장 정통한 인물이었고, 일본과의 외교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인물이었다. 그리고 「공문식」 발표 직전까지 일본을 오가며 내정개혁 문제를 협의하였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의 주체와 속도 방향 등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문식」의 국문사용을 연상시키는 글을 비슷한 시기에 남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두루 고려할 때,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공문식」은 유길준이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학술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공문식」 제14조 "法律과 勅令은 모두 國文을 근본으로 삼고, 漢文 번역을 첨부하거나 혹 國漢文을 혼용한다."고 한 조항이 일본 「공문식」에 없던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공문식」이 일본 「공문식」에 제5·제6·제10·제11·제14 등 5개 조항을 추가한 것임은 앞에서 이미 검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제5조 제6조는 명령을 발령하고 취소함에 대한 것으로 그 앞 제4조(일본 제4조)와 연관되어 있고, 제10조 제11조는 명령서의 날짜 기록과 서명 주체에 관한 것으로, 역시 그 앞 제9조(일본 제7조)와 연관되어 있었다.[41]

그런데 제14조는 이와 달랐다. 일본 「공문식」에 전혀 없는 내용일 뿐

41) 제4조는 總理大臣이 閣令을, 各省 大臣이 省令을 발령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제5조·제6조는 여기에서 警務使의 警務令과 地方官의 地方令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일 뿐이고, 제9조(일본 제7조)는 衙門令의 날짜 기입과 서명 주체에 대한 것인데, 제10조 제11조는 여기에서 警務令과 地方令을 따로 구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규정 내용과 용어 방식 등이 서로 흡사하다.

만 아니라, 그 앞뒤 조항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별도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특별히 추가하였던 것이다. 기록 내용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난날 오랜 세월에 걸쳐 변함없이 사용해왔던 문서 행정의 언어를 漢文이 아닌 國文 중심으로 바꾸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문서행정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혁명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일본 「공문식」과 무관하게 이렇듯 중대한 내용을 특별히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國文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만큼 남다른 학문적 성찰과 신념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하나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문식」 제14조를 추가하기 이전에도 공적인 영역에서 일부 國文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도록 한 사례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학무아문 편집국에서 國文綴字를 담당하도록 한 것,[42] 관리를 선발하는 銓考局 보통시험에 漢文 寫字 등과 함께 國文 과목을 포함시킨 것,[43] 巡檢 시험에 刑法 訟法 등과 함께 國漢文往復式을 포함시킨 것,[44] 군무아문에서 군졸들의 교육을 위하여 國文으로 軍卒敎科書를 편찬하도록 한 것[45]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 이는 국가의 공적인 인재 선발과 교육 등에 처음으로 국문 과목을 별도로 부과한 것으로, 이 또한 국문의 가치와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조치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이런 사례는 군국기무처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46] 모

42) 『章程存案』 學務衙門官制(1894.6.28.), "編輯局, 掌國文綴字, 各國文繙繹, 及敎科書編輯等事務."

43) 『章程存案』 銓考局條例(1894.7.6.), "銓考局, 掌考試各府衙所送選擧人, 其試驗有二法, 一普通試驗, 一特別試驗. 普通試驗, 國文, 漢文, 寫字, 算術, 內國政略, 外國事情, 內情外事, 俱發策."

44) 『章程存案』 行政警察章程 중 第五 巡檢選用章程(1894.7.), "巡檢, 必經試驗, 始可選用, 但受有精勤證書者, 不在此限, 巡檢試驗之法, 必通解刑法·訟法·警務法概略, 及國漢文往復式, 乃許入選."

45) 柳永益(1990), 軍國機務處議案, 8월 28일 조항, "本國軍卒, 未有敎養, 但知體操擔銃之爲職分, 而不知衛國護民之爲何事, 紀律以之未嚴, 心膽以之未固, 由軍務衙門, 以國文編纂軍卒敎科書, 每日限時間敎授事."

두 군국기무처에서 개혁안을 입안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안을 마련해 나가다가, 이후 마침내 공문식 제14조에 "法律과 勅令은 모두 國文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기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俞吉濬을 제외하고는 국문의 가치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뚜렷하게 피력한 인물이 없다. 전체 구성원 27명 중 유길준이 거의 유일하게 국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보여주었으며, 이런 성찰을 스스로 실천하여 여러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장편의 『서유견문』 20편 모두를 한문이 아닌 국한문혼용체로 기술하였음은 물론, 최초의 국어 문법서인 『朝鮮文典』(이후 『大漢文典』)을 저술하였고, 기타 『勞動夜學讀本』·『世界大勢論』·『波蘭衰亡戰史』·『伊太利獨立戰史』 등 국한문혼용체 혹은 국한문혼용체의 한자에 한글 음을 병기하는 방식의 특별한 저술을 낱낱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던 것이다.

유길준이 이렇듯 국문의 가치를 깊이 인식한 데는 일본 유학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1881년 朝士視察團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후쿠자와가 경영하는 게이오대학[慶應義塾]에 유학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무렵 일본에는 문자 논쟁이 한창이었다. 지난날 국가에서 공적으로 사용해 온 한문을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는데, ①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 1835~1919]·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1847~1928] 등은 '가나전용론'을 주장하였고, ②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935~1901]·하라 다카시[原敬, 1856~1921] 등은 '漢字節用論'을, ③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난부 요시카즈[南部義籌, 1840~1917] 등은 '羅馬字採用論'을, ④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 1867~1937]는 한

46) 軍國機務處 설립 이전에는 國文을 국가의 공적 언어로 인정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1875년 일본과 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할 때 제3조에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왕복 공문은 일본국은 國文을 사용하고 … 조선국은 그 眞文[漢文]을 사용한다(爾後兩國, 往復公文, 日本國用國文, … 朝鮮國用其眞文)"라고 명시한 것, 1883년 漢城府 소속 博文局에서 漢城旬報를 창간할 때 國漢文體로 발간하려던 당초 의도와 달리 漢文으로 발간한 것 등에서 이런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도 로마자도 아닌 별도의 문자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자는 '新國字論'을, ⑤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 1848~1900] 등은 아예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자는 '英語國語論'까지 주장하였다.[47]

이때 유길준의 스승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한자를 사용하되 쉬운 글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漢字節用論을 대표하는 학자였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적 언어로는 한문을 사용하고, 민간의 일상 언어는 가나[假名]를 사용해온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말 속에 무수하게 많은 한자어가 녹아 있으며, 이 때문에 급격하게 한자를 폐지하고 가나를 전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가나를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48]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쉬운 한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49] 자신이 직접 『文字之教』라는 책을 저술하여 쉬운 한자 약 802자를 글자

47) 1880년대 전후 일본 학계의 문자 논쟁 현황에 대해서는 黃渭周(2021) 213~217쪽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한 바 있다.

48) 『福澤全集』 第3卷, 『文字之教』(國民圖書株式會社, 東京, 1926), 端書, "日本に假名の文字ありながら漢字を交へ用るは甚だ不都合なれども,往古よりの仕來りにて 全國日用の書に皆漢字を用るの風と爲りたれば今俄にこれを廢せんとするも亦不都合なり今日の處にては不都合と不都合と持合にて不都合ながら用を便するの有樣なるゆへ漢字を全く廢するの說は願ふ可くして俄に行はれ難きことなり此說を行はんとするには時節を待つより外に手段なかる可し". 경북대 일어일문학과 이자호 교수가 일본어 해석을 도와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각주 49번 동일.

49) 『福澤全集』 第3卷, 『文字之教』(國民圖書株式會社, 東京, 1926), 端書, "時節を待つとて唯手を空ふして待つ可きにも非ざれば今ょり次第に漢字を廢するの用意專一なる可し其用意とは文章を書くに, むづかしき漢字ば成る丈け用ひざるやう心掛ることなり, むづかしき字をさへ用ひざれば漢字の數は二千か三千にて澤出なる可し此書三冊に漢字を用ひたる言葉の數, 僅に千に足らざゎども一と通りの用便には差支なし, こゎに由て考れば漢字を交へ用るとて左まで學者の骨折にもあらず唯古の儒者流儀に傚て妄に, 難き字を用ひざるやう心掛ること緊要なるのみ, 故さらに難文を好み其稽古のためにとて, 漢籍の素讀などを以て子供を窘るは, 無益の戲と云て可なり"

어휘 및 문장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일본 유학시절 유길준은 이런 문자논쟁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또한 한문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 직후 후쿠자와의 권유에 따라 『文字之敎』를 번역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漢字節用論이 일본뿐 아니라 우리 실정에도 잘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문이 국문인 시대를 청산하고 한글이 국문인 시대로 나아가야 마땅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못지않게 우리말 속에도 무수하게 많은 한자어가 있어서 갑자기 한자를 모두 폐지하고 한글만 전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또한 가능한 쉬운 한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국한문혼용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유길준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얼마 지나서 않아 다시 미국 유학을 떠났다. 報聘使 閔泳翊을 수행하여 갔다가 더머 학원(Dummer Academy)에서 공부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귀국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을 둘러보고 귀국하였는데, 이 때 그는 나라마다 제각각 고유한 문자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귀국 후 여러 저술에서 그때 본 경험을 기록하였다. “천하의 수많은 나라를 두루 돌아보건대, 각각 그 나라의 언어가 다른 까닭으로 문자 또한 이에 따라 같지 않았다.”[50], “언어 문자는 나라와 종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의 언어 문자가 있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의 언어 문자가 있으며,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의 언어 문자가 있으니, 이래서 우리 조선 사람 또한 조선 사람의 언어 문자가 있다.”[51]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한문 시

50) 俞吉濬, 『俞吉濬全集』 1책, 「『西遊見聞』 序文」, “且宇內의萬邦을環顧ᄒᆞ건ᄃᆡ各其邦의言語가殊異ᄒᆞᆫ故로,文字가 亦從ᄒᆞ야 不同ᄒᆞ니 … ”

51) 俞吉濬, 『俞吉濬全集』 2책, 「『朝鮮文典』 序文」, “言語文字ᄂᆞᆫ邦國種族을隨ᄒᆞ야各異ᄒᆞᆫ則英吉利人은英吉利人의言語文字가有ᄒᆞ며法蘭西人은法蘭西人의言語文子가有ᄒᆞ고伊太利人은伊太利人의言語文字가有ᄒᆞ니是乃吾朝鮮人이亦吾朝鮮의言語文字가自有ᄒᆞᆷ이라 … ”

대를 청산하고 우리 고유의 한글이 국문인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유길준은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인 1885년 12월 17일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7년간 포도청 소속 남산 구치소, 포도대장 韓圭卨의 집, 閔泳翊의 산장이 있던 白鹿洞(지금의 嘉會洞) 翠雲亭 등으로 옮겨 다니며 구금생활을 하였다. 갑신정변의 주모자로 일본에 망명 중이던 金玉均 朴泳孝 등과 친하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구금당해 있는 동안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를 다니며 보고 듣고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西遊見聞』을 집필하였는데,[52] 이때 그는 이미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학문적으로 분명하고 뚜렷한 언어 문자관을 정립하고 있었다.

> "대개 언어는 사람의 생각이 聲音으로 드러남이고, 문자는 사람의 생각이 形像으로 드러남이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자는 나누면 둘이고 합치면 하나이다. 우리 글은 곧 우리 선대 임금께서 창조하신 글이고, 한자는 중국과 통용하는 것인데, 나는 아직까지 또한 우리글을 전용[純用]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외국인과의 교류를 이미 허용했으니, 나라 사람이 상하와 귀천 여인과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저들의 사정[情形]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서투르고 난삽한 한문[文字]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여 실상과 어긋남이 있도록 하기 보다는 막힘없는 표현과 비근한 말뜻에 의거하여 실상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힘씀이 옳다." [53]

---

52) 『西遊見聞』은 1887년 그가 구금당한 장소를 閔泳翊의 白鹿洞 翠雲亭으로 옮겼을 때 민영익의 부탁으로 집필에 착수하였다. 집필 방법은 그동안 보고 듣고 공부한 것과 그때마다 간단하게 작성해 두었던 원고를 모으고, 잃어버린 원고는 다시 增補하는 방식이었는데, 특히 福澤諭吉의 『西洋事情』 내용을 많이 편입시켰다. 원고는 1889년 말에 집필을 마쳤고, 1890년 福澤諭吉이 창간한 일본의 신문 지지신보[時事新報]에 완성 원고를 국왕에게 바친 사실이 게재되었다. 이후 1894년 10월 報聘使의 視察員으로 다시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福澤諭吉에게 원고 간행을 부탁하였고, 유학생으로 동경에 남게 된 魚允迪과 尹致昊가 교정을 하였으며, 1895년 4월 25일 한글 활자로 출판이 가능한 交詢社에서 간행하였다. 俞吉濬의 「西遊見聞序」·「西遊見聞備考」, 李光麟의 『유길준』 제6장 '연금생활 7년간 저작에 몰두' 참고.

53) 俞吉濬, 『西遊見聞』, 「西遊見聞序」, "盖言語ᄂᆞᆫ人의思慮가聲音으로發ᄒᆞᆷ이오文字ᄂᆞᆫ人의思慮가形像으로顯ᄒᆞᆷ이라是以로言語와文字ᄂᆞᆫ分ᄒᆞᆫ則二며合ᄒᆞᆫ則一이니我文은卽我先王朝의刱造ᄒᆞ신人文이오漢字ᄂᆞᆫ中國과通用ᄒᆞᄂᆞᆫ者라余ᄂᆞᆫ猶且我文을純用하기不能ᄒᆞᆷ을是歉ᄒᆞ노니外人의交를旣許ᄒᆞᆷ애國中人이上下貴賤婦人孺子를毋論ᄒᆞ고彼의情形

> “책[서유견문]이 완성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친구에게 보여주고 批評을 청하였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가 애는 많이 썼지만, 우리글과 한자를 혼용함이 문필가의 법도를 넘어 안목이 있는 사람의 비웃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는 까닭이 있다. 첫째 말뜻[語意]이 평이하고 순조롭게 해서 문자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내가 책을 읽은 것이 적어서 글 짓는 법에 미숙하므로 記寫가 편리하고 쉽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나라 七書諺解의 법을 대략 모방하여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하였다.”54)

첫 번째 예문에서 유길준은 말과 글의 관계, 한글과 한자의 다른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한글을 전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다고 하면서,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하 귀천 여성 어린이를 막론하고 저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몰라서는 안 되고, 저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서투르고 난삽한 한문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여 실상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막힘없는 우리말 표현과 비근한 말뜻으로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힘씀이 옳다고 하였다. 한글이 한문보다 훨씬 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고 유용한 표현 수단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예문은 그가 『서유견문』을 한문이 아닌 국한문혼용체로 작성한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국한문혼용체가 특정 대상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풀이하는 七書諺解의 전통을 본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자의적으로 지어낸 이상한 문체가 아니라 한문에 익숙한 지식인들도 오랜 세월 활용해온 언해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분을 세운 말이다.

을不知홈이不可ᄒᆞᆫ則拙澁ᄒᆞᆫ文字로渾圇ᄒᆞᆫ說語를作ᄒᆞ야情實의齟齬홈이有ᄒᆞ기로ᄂᆞᆫ暢達ᄒᆞᆫ詞旨와淺近ᄒᆞᆫ語意를憑ᄒᆞ야眞境의狀況을務現홈이是可ᄒᆞ니“

54) 俞吉濬,『西遊見聞』,「西遊見聞序」, “書旣成有日에友人에게示ᄒᆞ고其批評을乞ᄒᆞ니友人이曰子의志ᄂᆞᆫ良苦ᄒᆞ나我文과漢字의混用홈이文家의軌度를越ᄒᆞ야具眼者의譏笑을未免ᄒᆞ리로다余應ᄒᆞ야曰是ᄂᆞᆫ其故가有ᄒᆞ니一은語意의平順홈을取ᄒᆞ야文字를略解ᄒᆞᄂᆞᆫ者라로易知ᄒᆞ기를爲홈이오二ᄂᆞᆫ余가書를讀홈이少ᄒᆞ야作文ᄒᆞᄂᆞᆫ法에未熟ᄒᆞᆫ故로記寫의便易홈을爲홈이오三은我邦七書諺解의法을大略倣用ᄒᆞ야詳明홈을爲홈이라”

그리고 국한문혼용이 한문보다 말뜻이 평이하고 순조로워서 글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독자 차원에서 장점이 많음을 내세웠으며, 작자 차원에서도 한문 글짓기에 미숙한 자신이 사실을 기록하고 묘사하는데 더욱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었다고 하였다. 언해의 전통에서는 물론 작자와 독자 모두의 입장에서 다 바람직한 글쓰기 방법임을 공공연하게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국한문혼용의 논리가 후쿠자와의 漢字節用論과 매우 닮아있음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유길준은 군국기무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듯 학문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國文觀을 확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자신의 뚜렷한 국문관을 각종 저서 논설 편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군국기무처가 설립된 이후 학무아문, 군무아문, 전고국 보통시험, 순검시험 등 공적인 영역에서 국문을 활용하도록 조치한 것은 물론, 이후 「공문식」에서 국문사용 원칙을 천명하도록 한 것도 모두 유길준의 기획이었음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유길준과 동년배이면서 동시대에 활동한 金澤榮(1850~1927)이 유길준을 지목하여 "議政府 都憲 유길준의 말을 채용하여 公文에서 국문과 한문을 섞어 사용하였다"[55]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Ⅴ. 마무리

「公文式」에서의 '국문사용' 선포는, 오랜 세월 國文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漢文을 그 자리에서 퇴출시키고, 나라에서 공적으로 한글을 國文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국·한문의 大轉換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선언을 과연

55) 金澤榮, 『韓史』(『金澤榮全集』 5책), 太上皇 甲午三十一年(1894년), "用議政府都憲兪吉濬言, 公文雜用國文漢文, 惟章疎及國史, 仍用漢文, 國文卽世宗所製訓民正音也."

누가 이끌어내었는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 상황을 비판적으로 직시하면서, 「公文式」에서의 국문사용 선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정치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甲午更張의 일환으로 선포된 개혁정책의 하나였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핵심적 추진 기관이었던 군국기무처와 그 구성원들을 점검해본 결과, 이 기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 약 10명, 그 중에서도 유길준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길준은 국내외 사정에 가장 해박한 개혁의 이론가였고, 총재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두루 신임한 군국기무처의 구심점이었으며, 이 시기를 관찰한 이들이 누구나 개혁안의 입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문식」은 군국기무처를 사실상 주도한 유길준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일본 「공문식」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용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것은 「공문식」을 기획한 주체가 일본 사정에 정통하였음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 또한 유길준이었다. 유길준은 군국기무처 설립 이전부터 일본과의 외교문제 해결에 앞장서왔고, 「공문식」발표 직전까지 일본을 오가면서 내정개혁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의 주체와 속도 방향 등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즈음 「공문식」의 국문사용 원칙을 연상시키는 글을 일본 후쿠자와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공문식」은 유길준의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공문식」 제14조 '국문사용' 관련 내용이 일본 「공문식」에 없는 것을 별도로 추가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렇듯 중요한 조항을 전격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國文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했을 터인데,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이런 성찰이 있는

인물은 유길준이 유일하였다. 그는 일본 유학시절 한문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기수단을 마련하자는 치열한 文字論爭을 체험하였고, 세계 각국이 제각각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음을 목도하기도 하였으며,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고유의 한글이 국문인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國文觀을 정립하였고, 이런 생각을 각종 저서 논설 편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 「공문식」에서의 '국문사용' 또한 유길준이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문식」에서의 '국문사용' 선포는 이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외교적으로나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유길준이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런 점에서 유길준은 한말 국·한문의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로 재평가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공문식」에서 '국문사용' 원칙을 선포한 것이 이후 국가의 공적인 글쓰기에 실제로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한문시대를 청산하고 한글시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미처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4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金雲泰,『朝鮮王朝行政史: 近代篇』, 一潮閣, 1993.
慶應義塾,『福澤諭吉書簡集』, 岩波書店, 2002.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俞吉濬全書』 Ⅰ~Ⅴ, 一潮閣, 1995.
柳永益,『甲午更張硏究』, 一潮閣, 1990.
李光麟,『유길준』, 근대인물한국사206, 동아일보사, 1992.
鄭肯植,『韓國近代法史攷』, 朴英社, 2002.
具仙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對朝鮮文化政略」,『韓國史硏究論叢』 30, 한미문화사, 2008.
권태억,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규장각』 17,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77~98쪽.
김건우, 「갑오개혁기 「공문식」과 공문서의 변화」,『고문서연구』 29, 한국고문서학회, 2006, 137~162쪽.
金周弼, 「19世紀末 國漢文의 性格과 意味」,『震檀學報』 103, 震檀學會, 2007, 193~218쪽.
朴漢民, 「갑오개혁기 보빙대사 의화군과 유길준의 일본 파견과 활동」,『한국근현대사연구』 8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45~87쪽.
송철의,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한국근대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출판부, 2005.
尹在敏, 「韓國의 開化期 漢文敎育(1) -公文式의 文書 表記 規定 再檢討-」,『漢字漢文敎育』 50, 한국한문교육학회, 2021, 139~154쪽.
이경용, 「한말 기록관리 제도 -공문서관리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 6, 한국기록학회, 2002, 161~223쪽.
이영학, 「갑오개혁 시기 기록관리 제도의 변화」,『역사문화연구』 2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89~126쪽.
이응호, 「갑오경장과 어문정책」,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1994, 33~53쪽.
허재영, 「근대 계몽기의 어문 정책 -『구한국 관보』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97~149쪽.

黃渭周,「漢文字의 受容 時期와 初期 定着 過程(1)」,『漢文敎育硏究』10,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115~149쪽.
黃渭周,「國·漢文의 傳統과 現實的 敎育狀況」,『漢文敎育硏究』2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191~218쪽.
黃渭周,「한말 지식인의 動向과 東學」,『嶺南學』6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7~51쪽.
黃渭周,「「公文式」에서의 '國文使用' 宣布 背景」,『大東漢文學』68, 대동한문학회, 2021, 205~235쪽.

Abstract

Entity Behind Planning "Using Korean" in the Official Document Form

Hwang, Wee-zoo

This study sought to verify who was the actual planning entity behind the declaration of "Using Korean" in the "Official Document Form" from political, diplomatic, and academic perspective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that the "Official Document Form" was a part of the 1894 Gabo Reform, and among the core institutions of the reform, the Military Government Office and its members played a crucial role. Upon examining them, it was found that about 10 individuals, particularly Yoo Gil-jun, were the main drivers behind the institution, and he was the most likely person to have planned the "Official Document Form." From a diplomatic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 "Official Document Form" was based on Japan's official document format, indicating that the planners of the "Official Document Form" were familiar with Japanese affairs. Yoo Gil-jun was also the most fitting person in this regard.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t was noted that Article 14 of the "Official Document Form" was added to the Japanese "Official Document Form," which required a deep scholarly reflection on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language. Among the members of the Military Government Office, Yoo Gil-jun was the only person who had this kind of reflectio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Yoo Gil-jun was the planner of "Using Korean" in the "Official Document Form," and he can be evaluated as the person

who led the transition from classical Chinese to Korean language in official documents.

keywords :
Official Document Form, Yoo Gil-jun, Korean language, classical Chinese, transition from classical Chinese to Korean language, 1894 Gabo Reform, Military Government Office.